

후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정 1997.01.03.

개정 2004.11.01.

개정 2009.02.06.

개정 2012.02.01.

개정 2013.01.15.

제1조(목적)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제31조 4항, 시행세칙 제10조2, 제64조 6항에 따라 졸업 학점 미달자에 대하여 후기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당해 학년도 졸업사정회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된 자는 후기졸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교양학점 부족(졸업학점의 5%이상) 및 현장실습 의무학과 현장실습 미취득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졸업 소요학점 미 취득자

제3조(수강신청)

1. 후기졸업 대상자는 학기초 등록기일 내에 해당학기, 학년, 과목을 재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제적처리 된다.
2. 후기졸업 대상자는 등록 기일 내에 신청학점에 따른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삭제

제4조(학점인정)

1. 삭제
2. 삭제

제5조(등록) 후기졸업 대상자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의 해당금액을 납부하여 등록한다.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3의 해당금액을 납부하여 등록한다.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의 해당금액을 납부하여 등록한다.
4.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한다.

제6조(졸업 및 수료)

1. 기 신청한 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칙 시행세칙 제64조 1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졸업정원 범위 내에서 학위(졸업)증서를 수여한다.
2.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후기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학칙 시행세칙 제 64조 2항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